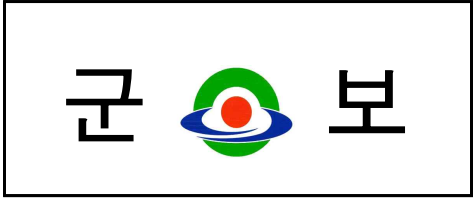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87호 2026. 2. 23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 하천점용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6-15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 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
2026년 2월 23일

예 천 군 수 (인)



구 분	하천점용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 주 소	예천군수(문화관광과장)
위 치	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-1번지
점용면적 (허가량)	7,975㎡
점용목적	토지의 점용
사업개요	달집 태우기 행사를 위한 토지의 일시점용
점용기간	2026년 3월 3일 (1일)